

# 전체

전체	일반	배포 콘텐츠
----	----	--------

점자보기 

##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작성일 2023-12-19 10:00    조회수 2,997    담당자 정아영    담당부서 필수의료총괄과

###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9.) -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연 소득 10%,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연 소득 20%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제외한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치료·중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 방지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 초과자(재산 7억 원 이하)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이하 120만 원(1인가구), 160만 원(2인가구 이상), 기준 중위소득 100~200%(개별심사 대상) 연 소득 20% 초과 시

- (지원항목)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 (지원제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형) 등 수령액 중복지원 배제

- (지원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 50%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 원(입원·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범위에서 지원)

- (입원 중 신청) 퇴원 7일 전(기초수급자·차상위는 퇴원 3일 전) 의료기관에 직접지급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최종 퇴원일·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신청절차)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상세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별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12.19.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개정.hwp	다운로드 ↓	미리보기/음성듣기 🔍
 [12.19.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개정.pdf	다운로드 ↓	미리보기/음성듣기 🔍
 [별첨]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	미리보기/음성듣기 🔍
 [별첨]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 ↓	미리보기/음성듣기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록

< 이전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 다음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개